



- ▶ 2007. 1. 17 배포
- ▶ 총 3 쪽 (사진 없음)

## 보도자료

- ▶ 능력개발지원팀 김영국 팀장  
능력개발지원팀 박종환 사무관
- TEL : 507-7238
- E-MAIL : hwan7500@hanmail.net

### 올해 실업자훈련 11만 여명 실시

- 지난해 보다 466억원 증가한 3,803억원 지원 -

- 올해 실업자, 대졸 미취업자, 비진학청소년 등 취약계층 11만 여명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이 실시된다.
  - 예산도 지난해에 비해 466억원이 증가한 3,803억원이 투입된다.
-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'07년도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계획을 확정하였다고 17일 밝혔다.
- 훈련종류별로는 전직실업자훈련 6만2천명, 대졸미취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실업자훈련 1만7천명, 비진학청소년 등을 위한 우선선정직종훈련 1만9천명, 국민기초생활 보호 대상자 등의 자활직업훈련 2천명, 여성가장실업자훈련 2천명 등이다.
- 훈련비는 전액 무료이며, 훈련기간은 과정의 특성에 따라 1~12개월이다.
  - 훈련참가자에게는 교통비(5만원), 식비(6만원)을 지급하고, 선반, 기계조립, 용접 등 우선선정직종의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의 수당이 추가로 지원한다.
- 훈련참가를 희망하는 자는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을 하고 훈련상담을 받은 후 본인에게 적합한 훈련과정을 선택하면 된다.

- 특히, 노동부는 지난해부터 지역별 인력수요동향 및 훈련수요 조사 등을 통해 「수요자 중심의 지역밀착형 실업자 훈련」을 한층 강화 하고 있으며
  - 올해에도 지역차원의 유망직종 또는 인력부족직종 등에 대한 「훈련과정 공모제」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.
- 신영철 능력개발심의관은 “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실업자들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조속한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각종 훈련을 무료로 실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”며
  - “실업자가 본인의 취업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지원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”고 말했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홈페이지([www.molab.go.kr](http://www.molab.go.kr))나 직업훈련정보망(<http://www.hrd.go.kr>)을 참조하면 된다.

**【참 고】**

**2007년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인원 및 예산**

(단위 : 명, 백만원)

| 훈련구분       | 지원대상  | 훈련인원           | 예산             |
|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<b>총 계</b> |   | <b>108,778</b> | <b>380,259</b> |
| 전직실업자훈련    | ○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는 실업자  | 62,025         | 155,449        |
| 신규실업자훈련    | ○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는 미취업자   | 17,075         | 42,644         |
| 우선선정직종훈련   | ○비진학청소년 등 실업자<br>- 15세 이상의 실업자 또는 인문계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인 상급학교 비진학 예정자  | 19,250         | 157,502        |
| 고용촉진훈련     | ○고용보험의 적용받지 않은 실업자, 취업보호 대상자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,143          | 8,477          |
| 영세자영업자훈련   | ○「부가가치세법」에 의한 간이과세 사업자(면세사업자)로서 연간 매출액 4,800만원 미만 사업자 등           | 1,250          | 3,112          |
| 자활직업훈련     | ○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 | 1,828          | 5,837          |
| 새터민직업훈련    | ○북한이탈주민(거주지보호기간 5년)   | 1,100          | 3,367          |
| 여성가장실업자훈련  | ○이혼·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자<br>○미혼여성으로 부모가 모두 없거나, 부모가 있더라도 근로능력이 없는 자 등 | 2,107          | 3,871          |